

KCI 윤리 행동강령

제정(2013.11.01) 개정(2021.09.01)

KCI Limited(이하 "KCI")는 세계 초일류 생활화학 전문기업을 지향,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혁신추구 및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창달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KCI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1.1 목적

KCI는 윤리경영 원칙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을 제정한다.

1.2 적용범위

본 강령은 KCI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직원은 고객, 주주, 경쟁 및 협력업체,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할 때 본 강령에 따라행동한다.

1.3 규정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령,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1.4 위반사항 제보

-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내부고발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 2)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타인의 위반사항을 제보한 임직원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1.5 무관용 정책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 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 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1.6 별도 규정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7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1) 임직원의 개인적 이해가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때 윤리경영 원칙과 본 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모든 임직원은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의 상충이 있거나(ex: 가족 또는 지인이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고용된 경우) 고객 또는 기타 비즈니스 협력업체 등의 기관에서 특정 직위, 관련 또는 재무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의 직위가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
- 3) 윤리경영 원칙과 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 합법성: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부합되는가?
- 투명성: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 가?
- 공정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 2.1 공존공영 추구
- 1) 고객 번영이 곧 우리의 번영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존중·고객만족·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 2) 고객사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처리한다.
- 2.2 최고 품질 및 안전 확보
- 1)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원료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 2) 고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2.3 고객 정보보호 및 알 권리 존중
- 1) 고객에 대한 정보는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성실히 공개하여 고객사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 3.1 주주의 권리 존중
- 1)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2) 공정한 영업활동을 통한 건전한 이익의 창출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3.2 투명 경영 이행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 4.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 1)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다.
- 2)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
- 4.2 비윤리적 행위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금품수수

구분	행동원칙
금품수수(경조금 등 현	◆금지(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
금, 물품 등)	으로 제공된 기념품은 제외)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금전거래, 공동투자 등	금지

2) 접대/향응수수

 구분	행동원칙
식사	비용 본인 부담
불건전업소	금지



N 0 0	사행성 오락	금지
-------	--------	----

4.3 공정경쟁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자율경쟁원칙을 존중하며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를 배격한다

제5장 임직원의 복무 윤리

- 5.1 임직원의 자세
-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신뢰/도전/혁신/인재/고객중심/성과중심'의 KCI 가치를 실현한다.
- 2)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지연, 학연, 혈연,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아니한다.
- 3)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사기, 횡령, 누설행위를 하지 않는다.
- 5.2 회사 재산의 보호
- 1) 회사의 물적 재산과 사업정보, 기술정보 등 지적 재산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3)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윤리

- 6.1 국내외 법규 준수
- 1) 국내외 윤리 법규(부패·뇌물·자금세탁의 방지 등)를 준수하며 국제협약·규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약과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 및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 2) 공직자와 언론에 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2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 1)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2) 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